

2024년 「제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지원 사업」 모집 공고

구미지역 내 제조업 연구인력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「2024년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 기업 및 근로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. 4. 22.

구미상공회의소 회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지원 사업
- 수행기관 : 구미상공회의소
- 모집인원 : 약 66명
- 모집기간 : 2024. 04. 22(월) ~ 2024. 05. 10(금)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연구개발(R&D) 분야에 종사 중인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가 속한 구미시 소재 제조업체
- 지원내용 : **연구개발 분야** 근로자의 **주택 구입/전세 대출 이자** 또는 **임차료**
- 지원금액 : 월 최대 30만원 (1인) *1개사 5명까지 신청 가능
- 지원기간 : 사업 공고일이 속한 달 ~ 12월 분까지 지급

2. 신청자격

- 자격대상: 공고일 기준 구미시 소재 제조업 연구개발(R&D) 분야에 종사 중인 근로자 혹은 종사 예정인 취업예정자
- 세부기준
 - ① (기업체)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구미시 소재 제조업체(대·중견·중소기업 무관)
 - 1)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
 - 2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증 받은 기업

② (근로자) 1), 2)의 조건 모두 충족 필요

1) 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주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혹은 취업예정자

*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일 것

2)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

* 취업예정자의 경우, 취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구미시로 주민등록한 자

③ (주택) '경상북도 구미시'에 소재한 주택

* 주택법 제2조에 의한 '단독주택' 혹은 '공동주택'에 해당되는 경우

○ 신청제외 대상

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
②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와 특수관계인인 자

* 특수관계인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및 임원 등

* 배우자의 경우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

③ 본인 혹은 혼인 후 배우자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

④ 임대인이 '가족관계증명서'에 등재된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인 자

⑤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참여 중인 자

*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

⑥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의거한 체불사업주의 사업장

⑦ 회사 소유의 기숙사, 임차인이 사업주인 자

* 임대인-회사 간 임대차 체결된 건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

⑧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

3. 지원사항

○ 지원조건 ※ 가, 나 조건 모두 충족

가. 공고일 기준 연구개발(R&D) 분야에서 주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혹은 취업예정자 (단,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)

(1순위)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*에 등록된 연구인력**

*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

** 연구인력: 전담요원, 보조원, 관리직원

(2순위)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지정된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연구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

나.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

* 취업예정자의 경우, 취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구미시로 주민등록한 자

○ 지원내용

① 대출이자 지원

1) 대상: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을 위해 실행한 대출이자 분

가. 대출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실행한 대출에 한해 지원가능하나, 기타 사정에 의해 배우자가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(가족관계 증빙만으로는 지원 불가)

나. 주택: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 (아파트, 빌라 등)

다. 다가구·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의 전부 및 일부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

라. 대출담보물건 및 근로자 등록 주소지가 동일할 것 (투기 및 투자 목적 대출 실행한 경우 지원 제외)

② 월세 지원

1) 대상: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한 지역소재 주택 임차료(월세) 지원

가.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월 지불하는 금액으로써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

* 묵시적 계약 연장을 사유로 계약서 상, 계약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

나. 보증금·관리비 등 임차료 제외한 비용은 지원 불가

③ 공통 사항

가. 지원금액: 1인 월 최대 30만원

* 이자 및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제 지출 금액만큼 지원하며, 30만원 이상인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

나. 지원인원: 기업당 최대 5명

다. 신청절차: 기업체는 구미상공회의소에 근로자 신청서류를 구비 및 취합하여 신청

라. 지급주기: 분기별 지급 (임차료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한 후지급)

* 예: 4~6월분 7월 지급/7~9월분 10월 지급/10~12월분 12월 지급

* 기업은 분기별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 지불된 비용 관련 증빙서류(임차료, 이자 납부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서류)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(재직증명서 등) 제출 필요 (미제출 또는 지급 시점에 최초 신청 내용과 변동 있을 시 지급 불가)

* 종사 예정인 취업예정자는 취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임차료 지원

마. 지원금 지급: (구미상공회의소) → (기업체) → (근로자)

* 수행기관은 정산서류 평가 후 필요 시 (현장)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을 시 지급

바. 기타사항

- 사업 중 연구원 등록이 취소될 경우 지원중단

- 사업개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

○ 신청 및 심사기준

-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
-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, 다음 기준에 의한 우대 적용

① 사업주가 구미 관내 거주자인 업체

② 청년근무자 (만39세 이하)

-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 지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

4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○ 신청기간 및 방법

- 기 간 : 2024. 04. 22(월) ~ 5. 10(금) (15 영업일 간)

- 신청주체 : 근로자 소속 기업체

- 신청방법 : 원본서류 제출 (직접 혹은 등기우편)

* 단, 우편접수 시 05. 10(금) 18:00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

- 문 의 : 구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정경민 대리

(T. 054-454-6601 (내선 5007), 이메일: jungkm1@korcham.net)

○ 필수 제출서류

-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,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
-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

① 「제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지원 사업」 신청서 1부 【서식 1】

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 1부 【서식 2】
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**【서식 3】**
 - ④ 재직증명서 1부
 - ※ 지원조건 2순위에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상 연구개발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
 - ④-1 근로계약서 및 취업확인서 1부 (취업예정자인 경우)
 - ⑤ 주민등록등본 (최근 5년 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) 1부
 - ⑥ 부동산 매매/전세/월세 계약서 사본
 - ⑦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확인서(이체 확인증, 영수증 등) 또는 최근 3개월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 (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, 대출 분할상환계획표 등 원금/이자가 나뉘어져 표기되어 있는 서류)
 - ⑧ 기업체 사업자등록증
 - ⑨ 기업체 통장사본
 - ⑩ 최근 2년간 재무재표
 - ⑪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현황
- 선택제출서류(수행기관 요청시 제출)
 -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(사업주가 구미 관내 거주자인 경우)
 - 기타 수행기관에서 접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

5. 유의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허위 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상공회의소(T. 054-454-6601 - 내선 500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